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투자신탁 명칭 변경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트러스톤TDF203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6. 트러스톤TDF204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7. 트러스톤TDF205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트러스톤적격TDF203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6. 트러스톤적격TDF204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7. 트러스톤적격TDF205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
	<신 설>	<p>부 칙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